◉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-072호

재정경제부고시 제2003-20호(2003.10.30.)로 지정하고,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-42호(2007.08.30.),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-105호(2013.09.04.), 경상남도고시 제2016-508호(2016.12.23.), 경상남도고시 제2018-461호(2018.12.13.), 경상남도고시 제2019-516호(2019.12.05.), 경상남도고시 제2019-566호(2019.12.26.),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-191호(2020.11.18.), 경상남도고시 제2022-471호(2022.09.29.)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04월 20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

◈ 주요 변경사유

○ **(사업기간)** 2003 ~ 2023년 → **2003 ~ 2027년 (증 4년)**

- 간선도로 국비 신규 지원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확정,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등 증가, 기반시설 등 준공 후 시설물 인수인계

○ **(사업비)** 2,699억원 → **2,871억원 (증 172억원)**

-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률 등 증가 비용과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비 변경

○ **(연도별 투자계획)**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**실투자비 등 반영**(보상비 등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계	기투자 (2021이전)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비고
기 정	2,699	1,170	1,173	356	-	-	-	-	
변 경	2,871	750	30	288	432	432	523	416	

※ 재원조달방법 : (기정) 민자 2,699억원 → (변경) 국비 109.5억원, 도비 109.5억원, 민자 2,652억원

◈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

1. 경제자유구역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: 변경 없음

2.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: 변경 없음

3. 개발사업의 시행자 : 변경 없음

4.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: 변경

가. 시행기간 : 변경

기 정	변 경
2003년 ~ 2023년	2003년 ~ 2027년 (증 4년)

나. 시행방법 : 변경없음

5. 재원조달 방법 : 변경

가. 사업비 내역 : 변경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기 정	변 경	증 감
사업비	2,699	2,871	증) 172

나. 연도별 투자계획 : 변경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 (2021이전)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
기 정	2,699	1,170	1,173	356	-	-	-	-
변 경	2,871	750	30	288	432	432	523	416

다. 재원조달방법 : 변경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사업비	국 비	도 비	민 자	비 고
기 정	2,699	-	-	2,699	
변 경	2,871	109.5	109.5	2,652	
증 감	증) 172	증) 109.5	증) 109.5	감) 47	

6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: 변경 없음

7.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: 변경 없음

8. 교통처리계획 : 변경 없음

9. 산업유치계획 : 변경 없음

10. 보건의료 · 교육 · 복지시설 설치계획 : 변경 없음

11. 환경보전계획 : 변경 없음

12.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: 해당 없음

13.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: 해당 없음

14.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: 변경 없음

○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의8 규정에 의함

1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·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목록 : 변경 없음

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: 변경

가.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: 변경

기 정	변 경
2003년 ~ 2023년	2003년 ~ 2027년 (증 4년)

나. 용수·에너지·교통·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: 변경 없음

다. 문화시설·공원·녹지계획 : 변경 없음

라. 도시경관계획 : 변경 없음

마.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

바.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: 해당 없음

사.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: 해당 없음

아.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: 해당 없음

자.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 · 수립 · 확정 · 승인 · 변경 등 의제사항 : 해당 없음

17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○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 · 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 · 진해경제자유구역청(051-979-5163)에서 열람할 수 있음.